

4.3.28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

제정 2020. 02. 05.

개정 2020. 09. 28.

개정 2021. 09. 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학칙」 제21장, 제83조 외국인 입학생의 정원외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외국인이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,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2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

제2장 지원 자격 및 모집단위

제3조(지원 자격) 각 학부(과)과정 및 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
2. 제2조 제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3. 한국어능력시험(이하“TOPIK) 3급 이상(예체능은 2급 이상), TOEFL 530/IBT 71 취득자 또는 공인 TOPIK 2급 이하 소지자 중 본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초당 TOPIK 3급 합격자(단, 입학 후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,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) <개정 2020.09.28., 2021.09.29.>

제4조(모집단위) ① 모집단위는 신입학과 편입학 2학년, 편입학 3학년, 4학년으로 하며, 본 대학의 학칙과 학사 규정에서 정하는 학부(과)로 한다.

② 모집 단위는 입학정원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 학년도 외국인 학생 모집 요강에 따른다.

제5조(모집시기 및 선발절차) 외국인 학생의 모집은 매년 2회로 하며, 선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요강에 따른다.

제3장 전형 방법

제6조(전형방법) ① 전형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서류심사로 선발한다. 다만, 예체능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

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- ②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가 모집요강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③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우편, 전화 등으로 진위 여부를 조사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자 및 그 주변인(재정보증인, 가족 등)에 대하여 면접(전화 등)을 실시한다.
- ④ 합격자는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⑤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따로 정한다.

제4장 제출 서류

제7조(제출서류) 입학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모집요강에 정하되 출입국 관리 업무와 입학전형 과정 중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
제5장 합격자 발표 및 입국관리 지원

제8조(합격자 발표)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한다.

제9조(입국관리 지원) 합격자의 입국과 관련된 업무는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지원한다.

제6장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배정

제10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기숙사 입사) ① 신입생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전원 입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부 신입생이나 국내 거주 친인척 등 부득이 기숙사 이외의 곳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② 기숙사비 등 그 밖의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따른다.

제7장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

제12조(한국어능력시험) ① 모든 외국인 신입생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하 소지자 중, 본 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(초당 TOPIK 3급)을 통과한자에 대해 입학할 수 있다. (단, 입학 후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,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가능) <개정 2020.09.28., 2021.09.29.>

② 본 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은 본 대학교 한국어교육지원팀에 의뢰하여 출제 및 평가한다.

③ 삭제 <2020.09.28.>

제8장 그 밖의 사항

제13조(그 밖의 사항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, 교육부 유학생 선발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하며,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하며, 202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